

	공간운영위원회규정	규정번호	3-8-2
		제정일자	2019.08.01.
		개정일자	2020.06.01.
		개정차수	1차
		소관부서	전략기획처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공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공간 운영위(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대학 공간 운영에 관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총장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대학 공간 운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대학 공간 관련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대학 공간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4. 대학 공간 사용 지정에 관한 사항
5. 공간관리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공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전문위원 1인과 교무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전략기획처장으로 한다.

제4조(전문위원) 전문위원의 위촉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부위원장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 외의 관련자가 참석할 수 있다.

제7조(서기) 위원회 위원 중 1인을 서기로 둔다.

제8조(소위원회) ① 안건에 대한 조사·분석 등을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은 부위원장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소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총괄한다.

제9조(소관부서) 위원회의 업무처리는 전략기획처에서 담당 한다.

제10조(운영세칙)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 년 8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